



보고서  
●●●●●●●●

# 일본 · 중국 의 석유 사정

구 익 모

〈석유협회 기획이사〉

## I. 일본의 석유정책 및 석유산업동향

### 1. 특석법의 폐지문제

(1) 특석법의 폐지가 석유업계에 미치는 영향

- 특석법은 소비지정제를 기본으로 하고, 석유제품 수입과 국내정제와의 탄력적인 선택·조합에 의해 수급변동에 대응하는 체제를 유지·정착시켜서, 연산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석유의 유종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안정공급을 실현하여 왔음.
- 그러나 특석법은 수입주체를 정제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생산물과 수입품의 경쟁을 유발하기 어렵고, 제품가격 수준 및 제품가격체계의 개선·시정에 장애요인이 됨.
- 따라서 국내석유제품시장에 수입품과의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산업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민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한이 만료되는 '96년 3월말을 기해 동법을 폐지시키기로 함.

- 특석법의 폐지에 의한 새로운 석유제품 수입주체의 확대는 지금까지의 소비지정제주의를 기본으로 해온 석유정책의 전환기로서 파악됨.
- 새로운 석유제품 수입 주체의 확대에 따라, 종래의 정제·원매부문은 코스트면에서 더욱 냉혹한 국제경쟁력 확보등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주유소 등의 말단판매부문에서는 구미제국에 비하여 주유소가 영세규모이자 高코스트구조로 되어 있고 주유소의 주력상품인 휘발유의 국내외 가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주유소 경영의 효율화·근대화·다각화등의 경영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특석법 폐지도 석유제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현재 비싼 휘발유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1차 석유위기 이후 휘발유가격은 높게, 등·경유

# 특석법의 폐지에 의한 새로운 석유제품 수입주체의 확대는 지금까지의 소비지정제주의를 기본으로 해온 석유정책의 전환기로서 파악되고 있다.

가격은 낮게 가격구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제품 수입의 증가는 휘발유 등의 가격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나, 얼마나 내릴지 그리고 제품 수입량이 얼마나 증가할 지 아직 구체적인 전망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음.
- 아시아의 석유 수요가 견실하게 증가하고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제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싱가포르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고려하더라도 경쟁관계가 치열하여 수입량이 많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수입주체에 의한 제품 수입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도, 프랑스나 독일에서와 같이 유통구조를 크게 변화 시킬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영국에서와 같이 국내의 잉여제품이 영향을 미치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1989년 정유회사에 대한 휘발유 생산할당제가 폐지되었을 때에 국내 잉여제품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돌아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잉여제품 가격이 영국에서 처럼 반드시 대폭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2) 석유업계(원매회사)의 대응책

- 일본의 석유정책의 기본은 향후에도 소비지정제방식을 견지해 나가는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도적으로 석유제품의 수입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가격에 비하여 현재 값이 싼 휘발유만을 수입함으로써 Cream Skimming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업자가 참입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사태에 대한 석유업계, 특히 원매각사의 대응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의 組合이 고려될 수 있음.

- 국제 석유시장의 성숙화·Global化에 대응하여, 수입 석유제품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제부문의 합리화·집약화, 저유소의 통폐합·공동화 등에 의한 물류부문의 합리화·집약화, 본사기능의 Slim化등의 코스트 절감 노력.
- 석유제품 가격체계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휘발유 가격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억제되어 온 등유·경유 등의 중간유분 가격의 상향조정을 통한 석유제품 이익구조의 개선노력.
- 석유제품의 고도화·고품질화에 따라 부생되는 bottom중유나 아스팔트 등의 잉여 잔사유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發電事業에의 참입 등 사업의 다각화

· 경쟁의 고도화 등의 노력

## (3) 신규수입의 참입 움직임과 전망

- 전술한 바와 같이, 휘발유가 유독 고가인 일본의 석유제품 가격체계의 현실하에서는 휘발유를 Cream Skimming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업자가 참입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등유·경유 등 중간유분은 거의 국제수준인 점에서 수입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석유업계가 직접 조사한 바는 없으므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언론등의 보도에 의하면 商社·全農·대형 특약점등의 판매업자 등이 신규참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아시아지역 전체의 석유수급 전망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휘발유 규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商社·全農·대형 특약점등의 판매업자 등이  
 신규참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질 수준으로 볼 때, 한국을 포함하여 양적으로는 일본 휘발유 수요의 약 3~4%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특석법 폐지에 따라서 급격히 휘발유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양적인 규모와 관계없이, 해외로부터 직접 제품이 수입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어쨌든 국제가격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석유업계는 신규 참입업자와의 가격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자체의 합리화,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는 중임.

〈全農〉

- '95년 6월 28일 제6차 신3개년 사업계획 확정
- 석유사업부문 - 제품수입 자유화에 대비한 체제 강화
  - 특석법 폐지에 대비한 석유저장시설의 확충 및 자체 수송구역 확대
  - 제품 수입 자유화를 활용한 국내 구매력 강화
  - 농협주유소의 통·폐합 및 현대화 추진
  - 농협주유소에 대한 경영개선 상담 충실
  - 농협주유소의 디자인 통일·정보네트워크 구축
  - 전국상호 주유시스템 도입에 의한 주유소 체널 확립
- 석유제품 저장시설
  - 휘발유 : 7.35만kl('95년 여름 확충)
  - 등 유 : 10.97만kl
  - 경 유 : 5.20만kl
  - 경질중유 : 2.84만kl

계 26.36만kl
- 석유제품 판매실적('93/'94 회계년도)
  - 휘발유 : 2,633천kl

- 등 유 : 2,728천kl
  - 경 유 : 1,888천kl
  - 경질중유 : 1,607천kl
- 계 8,856천kl

〈9대 종합상사〉

- 이토추·니치멘·토멘 등 3사 비교적 적극적
  - 이토추 : '96년 휘발유·등유·경유 10만kl씩 수입 계획
  - 니치멘 : '96년 휘발유·등유·경유 5만kl씩 수입 계획
  - 토멘 : '96년 휘발유만 1만kl 수입 계획
- 나머지 6사(미츠비시, 미쓰이, 수미토모, 마루베니, 가네마츠, CI, 잇쇼이와이)도 '96년에 구체화 계획
- 종합상사 주유소 약 6,500개(국내 총 60,421개 : '94년말)

(4) 특석법 폐지후 수입업자의 자격요건

- ① 수입제품별 70일분의 저장시설 보유(비축법)
- ② 품질조정능력 보유(품질조정법)
  - 품질조정능력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제품수입 판매못함,
  - 자체 품질조정능력이 없을 경우 국내 또는 해외 정유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체결로 가름할 수 있음.

※ 따라서 특석법 폐지는 완전한 수입자유화가 아니라 규제완화라고 볼 수 있으며, 동 수입자격요건은 간접적인 수입억제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됨.

2. 석유제품의 품질 및 검사 강화

(1) 품질강화

- 휘발유·등유·경유에 대한 JIS 개정

# 각사는 경영의 합리화·효율화의 핵심으로서 수송·유통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 '96년 1월부터 시행
  - 휘발유 JIS에 새항목 추가
    - 유허분 : 0.01%(100ppm) 이하
    - MTBE : 7% 이하
    - 벤젠 : 5% 이하
  - ※ 벤젠함량은 3년 이내에 더욱 낮출 계획임.
  - 등유 JIS의 개정
    - 유허분(1호) : 0.008% 이하  
(중전 0.015% 이하)
  - 경유
    - 유허분 : 현재 0.2% 이하  
'97년부터 0.05% 이하
  - ※ '96년 4월 특석법 폐지와 수입자유화에 대비,  
해당제품의 품질·규격을 사전에 강화했음.
- (2) 품질검사의 강화
- '96년부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강화 계획
    - 검사기관의 확충
  - '96년부터 주유소에 품질검사 합격마크부착 의무화 강력 시행
    - 현재는 유명무실
  - 유허경로 명확한 주유소(원매와 공급 계약체결 주유소)는 1년에 1회 검사
  - 유허경로 불명확한 주유소는 10일에 1회 검사(자기 비용부담)

### 3. 석유유통부문

- 중장기 석유제품의 유허효율화 대책
  - 각사는 경영의 합리화·효율화의 핵심으로서 수송·유허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가동율이 낮아 저유소의 폐기,

저유소의 공동화, 수송의 공동화, Joint-barter 거래등 모든 분야에서 합리화·효율화 추진

#### 〈실례〉

- 日石과 出光의 물류분야 업무 제휴
- 협력거점: 日石측→7개 정유공장 및 85개 저유소  
出光측→6개 정유공장 및 35개 저유소
- 대상물량: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등 4개 유종이며, 양사 판매량의 5~10%(판매세어: 日石 16%, 出光 15.7%)
- 효과: 양사 합쳐 연간 20억엔의 물류코스트 절감.

### 4. 주유소의 경영실적

#### (1) 주유소 및 판매업자수

- 주유소수는 약간 증가 추세
- 그러나 판매업자수는 꾸준히 감소
  - 경쟁 격화로 전업 및 폐업 증가에 기인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주유소	58,285	58,614	58,825	59,224	59,733	60,421
판매업자	32,835	32,642	32,413	32,060	31,766	31,559

#### (2) 휘발유 판매량 추이

- 수요 증가로 주유소당 월평균 판매량 증가
  - 그러나 미국(289kl)의 1/4, 영국(150kl)의 1/2 수준

(단위: kl/월)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58.7	62.6	66.7	68.8	70.6	72.1	75.1

#### (3) 휘발유의 총이익 추이

-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마진 감소

## 「재해대책기본법」(1961년 제정)에 기초해 유출유재해의 규모등에 따라 응급대책등을 해야 할 특별한 경우에 수상이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단위 : 엔/1)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3.2	15.0	19.0	19.1	20.2	20.5	18.2

### (4) 주유소의 수지상황

- 이익율은 '89년 이후 꾸준히 증가
- 그러나 영업이익율 경상이익율 모두 낮은 수준임.

(단위 :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영업이익율	0.0	△0.2	0.6	1.1	1.0	0.8	0.1
경상이익율	0.8	0.3	1.0	1.7	1.5	1.5	0.1

### (5) 영업이익율의 분포(휘발유)

- 흑자폭 6% 초과 기업이 대폭 감소
- 흑자폭 1% 이하 기업이 약 50% 수준

(단위 :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흑자폭 1% 초과	40.7	36.7	40.4	49.3	48.0	43.2	11.3
흑자폭 1% 이하	19.8	20.3	15.4	12.6	10.2	13.2	49.0
적자	39.5	43.0	44.2	38.1	41.8	43.7	39.7

## 5. 流出油사고대책의 체제 및 활동

### (1)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관계

#### ① 국가의 비상재해대책 조직

「재해대책기본법」(1961년 제정)에 기초해 유출유 재해의 규모등에 따라 응급대책등을 해야 할 특별한 경우에 수상이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비상재해대책 본부는 국무대신이 본부장이 되지만 긴급재해대책본부는 수상이 본부장이 됨. 통산성, 해상보안청, 소방청, 경찰서, 방위청 등 국가의 지정행정기관이나 그 지부(출장소 등), 지방공공단체, 기타 지정공공기관

이 서로 협력해 재해대책을 처리함.

#### ② 지방공공단체의 비상대책조직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都道府縣 단위 또는 市町村 단위조직으로서 유출유 재해상황 여하에 의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지방공공단체장이 대책 본부장이 됨.

#### ③ 석유콤비나트 등 특별방재구역의 조직

「석유콤비나트 등 재해방지법」(1975년 제정)에 따라 1976년 이후 석유 콤비나트 등 특별방재구역이 존재하는 都道府縣에 설치된 조직으로서 방재계획에 의해 知事を 본부장으로 하고 管區해상보안본부, 管區경찰국, 港灣 건설국등의 특정지방행정기관, 육상 자위대의 方面總監, 道府縣 경찰본부등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석유콤비나트에서 유출유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 가능함.

#### ④ 해상보안청의 조직

해상보안청에서는 「해상보안청법」(1948년 제정)에 따라 유출유 방제등의 책무수행을 위해 전국을 11 管區로 분할하고 管區해상보안본부 사무소로서 해상보안(감)부서, 분실, 항공기지 등을 설치하고 있음. 1988년말의 보유기자재는 유희수선 13척, 유희수기 25대, 오일펜스 약 30km, 고점도유·유희착재 회수 망 41式 이상이고 1961년 이후는 신규개발 C형 오일펜스(표준형인 B형 오일펜스보다 대형)1,000m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그 외, 대규모 유출유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동경만,伊勢(이세)만, 瀬戸(세토)內海의 각지역에 대해서는 유방제계획을 작성하고 여기에 기초해 그들 지역의 기자재 정비가 진행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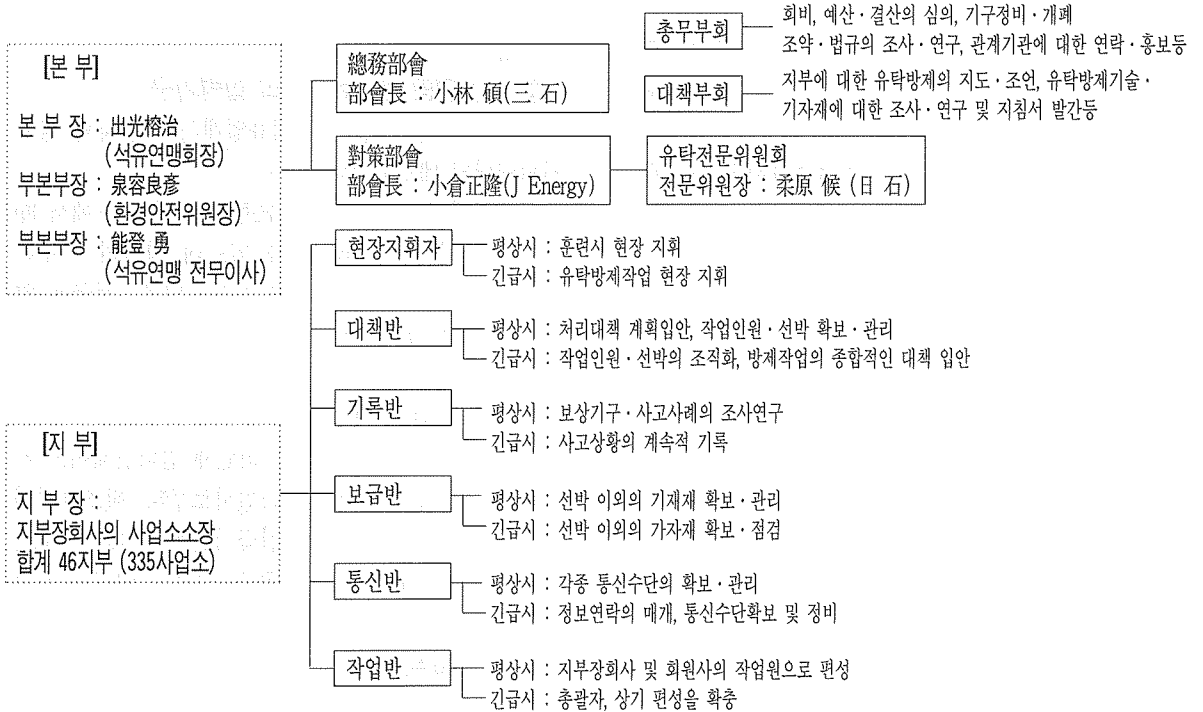
#### ⑤ 운수성(항만국, 지방항만건설국)의 조직

「운수성건설법」(1949년 제정)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사업업무를 관장하고, 지방항만건설국에서는 유희

# 海水油獨處理協力機構(日本)

1995년 8월  
 石油聯盟  
 海水油獨處理協力機構

1. 설립 : 1973년 1월 10일
2. 목적 : 평상시, 유조선, 정유공장등으로부터의 유탁사고에 관한 방지대책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유탁사고 발생시, 해상보안본부 또는 본기구 가맹회사의 지원요청에 따라 신속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회원사 : 석유연맹회원 25개사, 관련회사 29개사 합계 54개사
4. 조직과 업무구분



## 5. 기구의 특징

- |                             |                       |
|-----------------------------|-----------------------|
| ① 유탁사고시 회원상호 지원             | ② 회원제 임의단체            |
| ③ 전국적 조직                    | ④ 초동원조활동의 중시          |
| ⑤ 회원에 대한 광범위한 최신 유탁대책 정보 제공 | ⑥ 회원에 대한 勞動災害法の 전면 적용 |

(사무국) 석유연맹유탁대책부 (우)100 東京都千代田區大手町 1-9-4(經團連會館) Tel. 81-03-3279-3819(直通) FAX : 81-03-3242-5688

## 또한 해양오염등의 방제 및 재해의 극소화를 목적으로 민간에서 해상재해방지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수선, 작업선등을 보유해 필요한 경우는 유처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⑥ 항만관리자, 지방공공단체등의 조직

「항만법」(1950년 제정)에 따라 항만관리자는 항만 구역내 및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유지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지방자치법」(1947년 제정)에 기초해 지방공공단체는 그 지역 내의 청소등을 관장해 오일펜스 등의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음.

### ⑦ 민간합동조직

해상보안청은 1965년 전후부터 전국의 석유기지를 중심으로 항만별로 약 80개소의 민간합동 유출유해 대책협의회 또는 대형유조선 사고대책연락협의회등을 설치해 왔음. 이것은 과거의 유출유사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 당사자만의 유처리 활동만으로는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 필요한 민간기업, 지방공공단체를 구성원으로 해 협의제로 유처리를 협력하기 위해 조직된 것임.

## (2) 민간관계

### ① 해상재해방지센터의 조직

1976년 10월 1일자로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수대신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특별인가법인임.

해양오염등의 방제 및 재해의 극소화 목적으로 민간의 중추기관으로서 기대되고 있음.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② 해상보안장관의 지시에 의해 배출유방제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방제 조치업무자로부터 징수.(1호업무)

③ 선박소유자와 기타 者の 수탁에 의해 배출유의 방제, 소방선에 의한 소화 및 연소방지, 기타 해상방

재를 위한 조치를 실시.(2호 업무)

④ 해상방제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유회수선, 기름을 회수하기 위한 기계기구, 오일펜스 등 기타선박, 기계기구 및 자재를 보유하고 이들을 선박소유자의 이용에 제공.(3호 업무)

⑤ 해상방제를 위한 조치에 관한 훈련을 실시.(4호 업무) 해상방제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자재와 해상방제를 위한 조치에 관한 기술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해 그 성과를 보급.(5호 업무)

⑥ 前각호업무의 부대사업.

### ② 석유연맹 해수유타처리 협력기구

1973년 1월 10일자로 석유업계의 민간차원 상호 지원협력의 네트워크임.

석유연맹에 본부를 두고 北海道(홋카이도)에서 沖繩(오키나와)까지 46지부가 있는데 각각의 지부는 정유공장, 저유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국에 약 335사업소가 있다. 회원사는 석유연맹 25개사와 석유연맹 비회원 29개사 총 54개사임. 본부장은 석유연맹회장이 되고 각지부에는 각각 지부소속 사업소장 중에서 지부장이 선임됨. 회원제 임의단체이고 지부는 해상보안본부 또는 회원사로부터 원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상호지원의 긴급시활동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음. 기구의 개요는 표로, 지부의 배치는 각각 표로 나타냈다. 기구 전체의 기자재 보유량은, 현재 유회수선 40척, 작업선 300척, 유회수기 약 110기, 오일펜스는 이동식으로 약 320km, 유흡착재는 약 300kg, 유처리제 약 750kl로 일본 전국 보관량의 약 30~40%에 상당함.총래의 활동실적은 1974년 12월의 水島(미즈시마) 지구의 대량 유출사고나 1978년 6월의 仙臺(센다이) 지구의 대량 유출사고를 비롯해 많은 사고에 자체적으로 출동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일본 선주협회 유출유방제대책협의회의 선박소유자 단체 조직이나 방재사업회사등의 조직이 있다.

### ③ 석유기지기업간의 상호지원조직

유방제 기자재나 인원을 석유기지의 근접 사업소간에, 상호지원형태로 유사시에 상호 협력하는 것은 1966~1974년에 걸쳐 협정을 맺어 실시되어 오고 있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규모등에 따라 다르지만, 유방제 능력 증대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 ④ 석유콤비나트 특정사업소의 상호지원조직

「석유콤비나트 등 재해방지법」에 따라 1976년과 1977년에 걸쳐 석유콤비나트 등 특별방재구역의 특정사업소간에, 석유콤비나트 방재계획의 일환으로서 민간차원의 유방제기자재 공유등의 조치에 의해 유방제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

### ⑤ 기타 민간 조직

일본선주협회 유출유방제대책협의회의 선박소유자 단체 조직이나 방재사업회사등의 조직이 있음.

### (3) 민간 공동유출유 처리조직의 특징

#### ① 해상재해방지센터 조직

㉓ 1976년 발족 이래 12년간 취급건수는 70건으로 1호 업무 12건, 2호 업무 58건이다. 1건의 평균 배출유량은 약 100㎥임.

㉔ 원칙으로 표류유 처리는 원인자를 대신해 사전에 계약되어 있는 계약방재조치 실시자(유방제 능력을 가진 민간회사)를 이용해 인원, 선박, 기자재를 이용해 처리작업을 실시함.

㉕ 원래 유방제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선박 관계의 지원을 주로 하는 법률로 정해진 조직으로서 센터 자체적으로도 유회수선 11척, 기타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속작업원은 없음. 유방제 알선역이라 할 수 있음. 유방제능력을 가진 석유회사에서는 원인자로 센터에 방제를 의뢰한 적은 없음.

㉖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법률」중에서 배출유의 방제체제는 오늘날 해상보안청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고 원인자등의 유방제 의무자와 실제 활동기관으로서의 해상재해방지센터를 중심으로 법제상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기본형식은 완성되어 있음.

### ② 석유연맹 해수유타처리협력기구의 조직

㉓ 신속한 초기활동에 중점을 둠.

㉔ 석유업계내의 상호원조 회원시스템을 위해 해상보안본부 또는 회원사의 요청으로 발동함.

㉕ 활동단위는 지부이고 발동시 본부의 양해를 성립시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음.

㉖ 평상시, 긴급시를 불문하고 필요한 경비를 모두 당사자부담으로 하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은 없음.

㉗ 기자재의 전국적 지원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음.

㉘ 일상활동으로서 본부로부터 각 지부장 앞으로 지침서 형식으로 유방제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송부하고 있음.

### ③ 석유기지기업간 상호원조조직

㉓ 신속한 원조에 중점을 둠.

㉔ 민간조직중 가장 오래 되었음.

㉕ 활동기간은 짧음.

### ④ 석유콤비나트 특정사업소간 상호지원조직

㉓ 특정사업소간 상호지원형태로서 신속한 출동에 중점을 둠.

㉔ 유방제 기자재의 공유를 근간으로 함.

㉕ 유사시 유출유를 근해로 확산시키지 않도록 오일펜스 설치전장의 능률화 등을 도모함.

이상 여러 유방제조직의 개요를 기술했지만 모두 만내, 항내, 연안 근처 장소에서의 조직임. 원거리의 경우는 없음.



# 海水油獨處理協力機構(日本)

항목	조직	石連海油協	(石災法)에 기초한 공동 방재조직	근접 기업간 상호 원조 협정에 의한 조직	漏出油 제해대책협의회	해상제해방지센터	지역방재계획에 의한 조직(해상防災부문)
민 官 別	民 間	民 間	民 間	民 間	民 官	民 間	民 官
설립년도 및 시기	1973년	1976~1977년	1965~1974년	1965년 전후	1976년경	1976년경	1971년경
조직의 규모	지역적, 전국적 (47개 지부)	지역적	지역적	지역적	지역적 (약 80개소)	전국적(자재 29기지, 油回收船 10기지)	지역적(38都道府縣, 약 130市町村)
설립목적	회원이사가 관계된 유류사고 시 회원 상호 협력에 의한 油防除 활동 실시	특정사업소간 기자재 공유 등에 따른 油防除 능력의 효율화 도모, 유 방재활동 실시	기자재 및 인원의 상호원 조에 의한 油防除 능력의 강화를 도모	해당지역에서 유출油 사고발생 경우 油防除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실시를 추진	민간油防除의 중심적 존재로서 센터를 설치 해 해상제해 발생 및 확대방지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재산등의 보호	대형유조선에 의한 대량 유출 사고발생에 대비해 비상체제 확립, 유사시 피해 최소화	지역방재계획에 의한 조직(해상防災부문)
법적근거	無	[石災法]	無	無	해상보안법의 행정지도	[해양오염 및 해상제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해대책 기본법]
조직구성원	석유연맹회원 및 당기 구에 가맹이 승인된 회사	특정사업소	석유기지 및 기타 근접사업소	해상보안 당국, 지방공공단체, 船主, 석유관계 기업등	센터 및 계약방재 조직 실시자	지방공공단체 및 관계 민간기업등	지방공공단체의 장
조직의 장	본부 본부장(石連會長) 지부-지부장	사업소의 장	사업소의 장	해상보안당국의 장	센터 회장	지방공공단체의 장	지방공공단체의 장
특 정	출동의 신속성	신속	신속	신속	신속(단, 대항면에서는 보통)	보통	보통
	기자재 도착시간	신속	신속	신속	신속(단, 대항면에서는 보통)	보통	보통
	기자재 공급가능량	제한없음	한계있음	한계있음	한계있음	大	한계있음
	활동가능기간	단기	단기	단기	장기	장기	장기
비 고	활동구역	제한없음	灣 또는 港內	灣 또는 港內	灣 또는 港內	영해내	연안광역
	해상화제대처능력	無	無	無	無	有	有
비 고	유탁대책을 목적으로 한 회원제 임의단체	특정기자재나 인원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민간조직으로는 가장 오래되었고 실리적이다.	필요한 港, 灣에 설치	원인자를 대신해 유탁 처리를 위한 인원선박, 기자재를 모아 처리 작업을 실시	석유컴비나트등 특별 방재구역에 대해서는 석유컴비나트등 방재 계획에 의한 조직이 여기에 해당	추진업무 : 漂流油처리

# 중국의 석유산업은 개발, 정제, 수출입, 유통등이 각각 별개의 회사로 나뉘어져 있다.

## II. 중국의 석유산업 현황

### 1. 석유산업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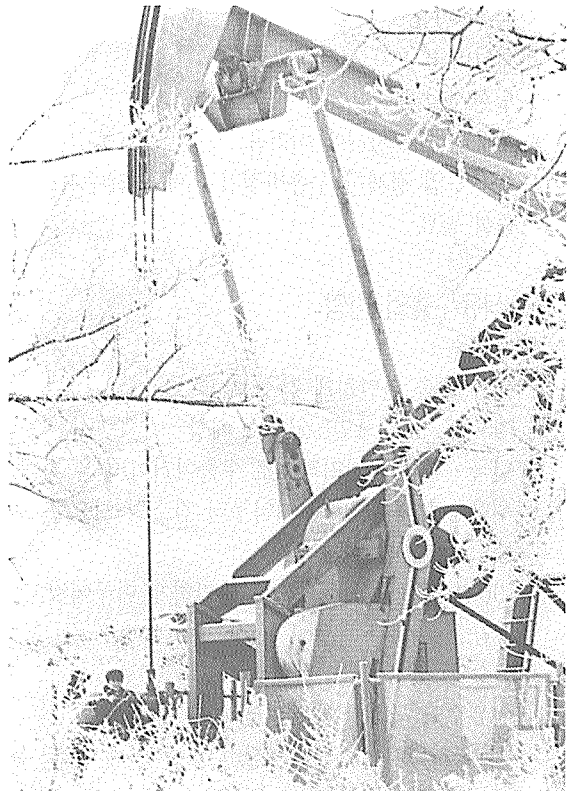
- 상류부분
  - 육상석유개발·생산 : *CNPC*(중국석유천연가스 총공사)
  - 해양석유개발·생산 : *CNOOC*(중국해양석유 총공사)
- 하류부분
  - 석유정제 : *SINOPEC*(중국석유화학 총공사)
  - 석유수출입 : '93년 3월까지 *Sinochem*(중국 화학수출입 총공사) 독점  
'93년 3월 이후 3원체제(*Sinoc-hem, China Oil, UNIPPEC*)
  - 석유유통 : 中國石化販賣公司

### 2. 석유수급 현황 및 전망

#### (1) 중장기 원유 생산계획 및 전망

- 원유생산은 금세기말까지 300만b/d 초과 어려워
  - 280만b/d~290만b/d 수준 예상
- 주요 생산기지인 동북부지역의 유전 노후화로 자연 감소량 연 40만b/d 달해  
(총원유 생산량의 15% 해당)
  - 현수준의 원유 생산 위해 보충 필요
  - 유전 자체의 가채매장량은 30년간 생산 가능
  - 그러나 유전들이 중후반기에 접어 들었음.
- 해양석유생산 증가세
  - 금년 총생산량 16만b/d 전망

- '96년 총생산량 20만b/d로 증가 전망
- 중서부(신강)지역서 원유생산 증가 예상
  - 현실적으로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매장량은 많으나, 개발·생산조건이 열악함.
  - 동북부지역의 감소량 대체에 시간 걸려
  - 대외개방하여 개발해도 수송이 큰 문제
- 중서부유전개발촉진
  - 차관 도입후 원유(동북지역 생산원유 : 현물) 상환 검토
  - 대경원유는 저유황으로 수입선서 선호
  - 현추세로 볼 때 저유황원유 가격 강세 예상.



## 중국의 원유수출은

### 완만한 감소가 예상되나 제품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2) 석유소비 전망

- 석유내수는 GNP 8% 증가시 4~5% 증가 예상
  - 사람에 따라 GNP 성장을 수준으로 예상도 함.
- 석유소비를 GNP 성장율의 절반 이하로 보는 이유
  - 현재 에너지낭비 많아 그만큼 절약여지가 큼.
  - 석탄이 많이 생산되고, 정부도 석탄 사용권장
  -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절약형구조로 변화 지속
- 석유수요 연간 10만b/d 증가
  - 이를 위해
  - 1) 수입 증대, 2) 석유대체 추진, 3) 수출감축 추진 필요
- 정제설비 및 2차 시설확충 필요
  - 탈황시설 부족
  - 고유황원유 처리에 어려움.
  - 원유수입 정제시 수송비절감 위해 연해주지역에 증설 필요

#### (3) 석유수출입 전망

- 원유수출
  - 원유 수출 완만하게 감소 예상
  - '95 및 '96년 4만b/d 감소 예상
  - 한국·일본은 지리적으로 수출여건이 좋은 지역
  - 원유수출 감소시 먼 지역부터 감소될 것으로 예상.
  - '96년 대한국 원유수출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석유수입
  - 원유수입 국내정제 위주로 해야 하나,
  - 아직 정제시설증설 및 설비 개선 안돼, 제품수

#### 입 유지 필요

#### (4) 환경문제

- 환경문제를 중시하나 석유 소비에 큰 영향을 못 미침.
- ※ 아직 환경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듯 함.

### 3. 석유유통 현황

#### (1) 주유소 현황

- '93년 12월말 약 10만
- '94년 4월 약 12만개로 약 20% 증가
  - 大部分의 省과 市에서 주유소 포화상태
  - '94년 4월말 현재 : 전국도로망 총길이 110만 km
    - 평균 9.17km마다 주유소 1개
    - 경제발전이 현저한 곳에서는 1km당 2개
- '94년말
  - '94년 5월 1일부터 시작된 개혁 및 개편 이후 감소
  - 약 12만→약 8만개로

#### (2) 소유형태별 주유소수의 변화

- '94년 5월 1일부터 시작된 개혁으로 주유소수가 대폭 축소
- 소유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 中國石化販賣公司의 소유
  - 同공사가 전국석유제품의 판매를 총괄하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다시 부여받음.
  - 즉 同공사가 국내의 석유제품의 소매업무를 거의 독점하게 되었음.
  - 이밖에 재편후 정유회사가 건설한 주유소가 同

## 주유소수는 94년 4월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94년 5월 1일의 개혁으로 그 수는 대폭 축소하고 소유형태도 바뀌고 있다.

공사의 소유가 되거나, 同공사의 판매대리점이 됨.

- 개인 또는 기타경영조직이 설치한 주유소의 일부는 폐쇄되고, 同공사의 판매대리점이 됨.
- 이에 따라 재편후 同공사소유의 주유소가 대폭 증가됨.
- 同공사 이외의 各部 또는 公司가 경영하는 주유소
  - 이들 주유소는 이번의 재편으로 대폭 감축되고 또한 현행 소유형태를 변경토록 규정됨.
  - 재등록후는 同공사 소유의 각지사 및 판매대리계약 체결하고, 판매 제품은 同공사소속의 현지공사에서 구입, 공정가격으로 공개 판매해야 함.
- 외국기업이 중국의 沿海지역에 설치한 합작 또는 전액 투자한 주유소

### (3) 소유형태별 주유소수

- 중국 石化공사 소속의 주유소
  - 약 13,000개
  - '93년말에 비해 62% 증가
  - 규모가 크고 연간 판매량이 많음.
  - 현재 중국 주유소의 중심적인 존재
- 중국 石化공사와 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한 주유소
  - '94년말 현재 약 63,000개
  - 숫자는 많으나, 규모가 작음.

- 개인경영의 소점포가 대부분
- 外資 또는 外資와의 합작 주유소
  - '94년말 현재 약 4,500개
  - '93년말 대비 12.5% 증가
  - 향후 서서히 증가 예상
  - 주로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沿海지역에 집중 예상.

### (4) 주유소당 판매량

- '94년 5월부터 시작된 재편작업으로 소규모이며, 일정기준 미달의 수작업 주유소는 대폭 감소
- 따라서 '94년 주유소당 판매량은 '93년보다 대폭 증가
- 중국 石化공사 통계
  - 휘발유 및 자동차용 경유의 '94년 주유소당 판매량 : 350톤 (전년비 45.8% 증가)
  - 향후에도 증가 예상
- 대형주유소의 연간 판매량 : 이미 5,000톤 이상
  - 이중에는 연간 1만톤에 달하는 주유소도 있음.
- 중형 주유소의 연간 판매량 : 600톤
- 소형 주유소의 연간 판매량 : 300톤
- ※ 각주유소의 자동화 정도와 각지역의 자동화 대수가 달라, 각 주유소당 판매량은 큰 차이가 남.

◆ 힘껏 밟은 가속페달 사고위험 석유낭비 ◆